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04
----------	-------

발의연월일 : 2025. 7. 24.

발 의 자 : 정일영 · 박선원 · 허종식
강득구 · 이상식 · 문금주
박용갑 · 이성윤 · 서영교
황명선 · 이병진 · 한민수
박해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확산으로 인해, 총기 및 그 부품을 무단으로 제작·조립할 수 있는 설계도, 조립 매뉴얼, 3D 설계파일(CAD, STL 등)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며, 사제총기 제작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총포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이 불법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총포에 ‘사제총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유해 정보의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제충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디지털 공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통해 사제충기 및 총포 부품 관련 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안 제44조의7제1항 및 제44조의9).

참고사항

이 법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중 “총포”를 “총포(사제총기를 포함한다)”로,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품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데 활용되는 3D프린터용 설계 파일(CAD, STL 등을 말한다),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으로 한다.

제44조의9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사제총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활용되는 정보(3D프린터 설계 파일, 조립 매뉴얼, 영상 링크 등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내용의 삭제, 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 지정 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2.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u>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u>	6의3. <u>총포(사제총기를 포함한다)</u> ----- ----- -----포함한다) 또는 그 부품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데 활용되는 3D프린터용 설계 파일(CAD, STL 등을 말한다), 조립 매뉴얼, 제작 도면, 영상 링크,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6의4. ~ 9. (생 략)	6의4.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u>

<신 설>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사제총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활용되는 정보(3D 프린터 설계 파일, 조립 매뉴얼, 영상 링크 등을 말한다)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해당 내용의 삭제, 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 지정 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